

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보	기 관 의 장



제 792 호 2012. 12. 28(금)

## 규 칙

○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399호[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] .....2

회 관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기획홍보실(☎241-7124 행정7124)

**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
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**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*윤종오*



2012년 12월 28일

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399호

**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
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**

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배송자 선정 시에 협약체결 기간은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배송자 선정 협약체결 경과조치)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협약체결을 받은 배송자는 이 규칙에 따라 협약체결을 한 것으로 본다.

◆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◆

1. 개정이유

- 학교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배송자에게 안정적인 사업기간을 제공해 급식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효율적인 배송기능을 강화
- 식자재 수요자와 공급자 간 학교급식사업에 대한 공공성에 공감대를 형성

2. 주요내용

가.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배송자의 선정기간에 대한 기준 변경(제15제3항)

- (기존) 배송자의 선정과 협약체결 1년
- (개정) 배송자의 선정과 협약체결 2년, 한 차례 연장